



#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



##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란?

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(BCMS)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

##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(BCMS,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)

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·경감·대응·사업연속성·복구체계를 수립하고, 이를 실행·운영·감사·검토·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



## 인증 내용

### 1. 추진근거

-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)
-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우수기업 인증 등)
-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(인증신청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
- 「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」 제18조(안전보건기술 개발 등)
- 「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 고시)」

### 2. 유효기간

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

### 3. 담당기관

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(예방안전제도과) 044-205-4518

## ■ 인증 신청방법 및 절차

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  
(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회사소개서, 재해경감활동계획 및 요약보고서, 직전연도 재무제표, 입증자료 등)

※ 「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(행정안전부 고시)」 참고



기업재난관리표준(행정안전부 고시)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,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(1차 문서평가, 2차 현장평가)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,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

## ■ 인증평가 기준(평가 분야)

1.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기획
2. 목표달성계획 수립
3. 운영 및 실행
4. 교육 및 훈련
5. 수행평가
6. 개선



## ■ 인증 노하우

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'기능연속성계획'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, 「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 고시)」을 숙지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

## 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

